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해금지 응급의료 범위의 확대 및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24호)
-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79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4
1. 방해금지 응급의료 범위의 확대 등	4
2.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12

I. 개요

1. 안철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안철수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13.
- (3) 회 부 일 : 2025. 3.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해 행위가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과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상담시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해에 이르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법적 미비점이 있음. 또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로만 명시해 독립된 외상센터에서 응급의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는 개별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

2. 이주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주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17.
- (3) 회 부 일 : 2025. 3.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현행법상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었음.

이는 그 대상 행위가 응급의료 과정을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현행법 정의 규정에서는 응급의료를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에서는 그 금지행위 대상을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것으로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 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실 내 응급환자와 응급의료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방해금지 응급의료 범위의 확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응급구조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이하 “응급의료종사자¹⁾”)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하는 것은 금지되며, 방해금지되는 응급의료에는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가 포함됨.

□ 개정안은 방해금지되는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안철수의원안) 또는 ‘상담 등’(이주영의원안)을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철수의원안 제12조제3항 신설).

1) 현행법 제2조제4호는 응급의료종사자를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로 규정하나, 예외적으로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항 및 제60조(벌칙) 제1항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 이하 동 보고서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를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도 포함된 의미로 사용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illegible]

현행	안철수의원안	이주영의원안
<신설>	③ <u>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u>	

나. 검토의견

□ 우선 방해금지 응급의료 범위의 확대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행법 제2조제2호²⁾는 ‘응급의료’를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조제1항은 ‘방해금지되는 응급의료’를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규정하여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응급의료의 범위에 비해 ‘상담 등’이 미포함되어 있음.³⁾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법률 연혁을 살펴보면, 법 제정(법률 제4730호, 1994. 1. 7. 제정) 시에도 ‘응급의료’는 ‘상담·구조·이송 및 진료 등’으로 규정된 반면 ‘방해금지 응급의료’는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로 규정되어, 각각 이송 및 응급처치의 포함여부에 있어서는 현행법과 차이가 있었으나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 등’이 미포함된 것은 현행과 동일하였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1995. 1. 1.] [법률 제4730호, 1994. 1. 7.,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현행법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제60조제2항제1호4)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⁵⁾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방해금지 응급의료 범위에 상담이 포함될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 대해 행하는 상담의 방해가 제60조제2항제1호의 벌칙 적용대상에 포함되게 됨.

□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 처치 및 진료 등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안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폭력 등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되는 응급의료의 범위에 상담을 포함하여 방해금지 응급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⁶⁾

3.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5조(응급의료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5) 이는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벌금보다 최고액을 높게 규정한 것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2025년 1월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가해진 폭력이 상담 중 발생했다는 사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등,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음.

<경기일보, “병원에서 의료진 때렸는데 ‘단순 폭행’... 응급의료법 위반의 허점”, 2025. 2. 2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6580391>>

- 한편, 응급의료의 방해금지 위반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므로, 방해금지 응급의료에 ‘상담’이 아닌 ‘상담 등’을 추가할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의 보호 조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인력·장비·시설 등 보호 조치의 자세한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여질 사항이나, [참고]와 같이 응급실에서 연간 800건 이상 폭력 등이 발생(2024년 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임.

- 다만, 응급의료기관별 편차는 있으나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응급의료기관이 상당수 존재⁷⁾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보호 조치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참고로, 현행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에 대한 주요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의료법」 제36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⁸⁾에 따라,

7)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평균 병상 수(2023년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36.9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6.3개, 지역응급의료기관 10.8개(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4.10.)

8)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 개설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 마련 및 교육,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 작성 및 게시 조치를 하여야 함. 다만,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평균 병상 수가 100개 미만⁹⁾인 점을 감안할 때 상당수의 응급의료종사자가 동 보호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의2·별표 7부터 8¹⁰⁾까지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을 1명 이상 갖추어야 함.¹¹⁾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2.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3.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4.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하여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9) 각주 7 참조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1. 시설기준·장비기준·인력기준
- 다. 인력기준

인 력	인력기준	비 고
라)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7]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2. 인력기준

인 력	인력기준	비 고
다.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2. 인력기준

- 셋째,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상 사고·질병과 같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¹²⁾과 같은 일반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경우,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도 응급의료에 포함되기에 상담 방해도 폭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보호조치 마련에도 공감

- * 한편 개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보안인력도 폭행으로부터 보호해 적극적인 역할을 보장할 필요도 있음.¹³⁾

인 력	인력기준	비 고
다.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 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응급실 이외 의료기관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함)

11) 동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는 보안인력과 보안장비가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은 보안인력의 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며 보안장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2017. 10. 24.>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이하 생략)

□ (법무부)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상담 방해행위를 추가하여 안전한 응급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행위 도중에 구두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인 상담은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등 응급의료행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별도로 개정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도 고려 필요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 조치 방해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다만,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이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응급의료기관에게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그리고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어떤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 폭행이 발생하더라도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하는 경향이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에 대하여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 조항¹⁴⁾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13)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유사한 취지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2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24. 6. 28. 발의)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 포함, 의료기관 내 주취폭력자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 적용 제외 등

14)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치상과 폭행치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의 처벌 규정을 신설(안철수의원안·이주영의원안 제60조제1항)**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철수의원안 제60조제1항).

- 현행법 제60조제1항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

이는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59조제1항¹⁵⁾에 따른 폭행치상 및 폭행치사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엄벌하여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15)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현행	안철수의원안	이주영의원안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생략)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두 개정안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철수의원안과 이주영의원안 모두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일하나,

안철수의원안은 폭행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하고 기존 폭행치상 규정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 반면,

이주영의원안은 폭행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정형과 동일하게 신설(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하며 기존 폭행으로 인한 상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폭행에 포섭하여 규율하게 됨.

- 또한 안철수의원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안 제60조제1항)이 적용되는 장소의 범위를 기존 ‘응급실’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여, 응급실 외부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가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임.

- 각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 않거나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더라도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른 폭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환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폭행에 의해 상해에 이르는 경우와 상해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율(이주영의원안)함에 있어서는, 상이한 죄질에 대해 일률적인 벌칙이 적용됨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형법」에서 폭행과 폭행치상의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행법에 따라 개정안의 취지가 일부 충족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의료법」 제12조제3항 및 제87조의2제2항제2호¹⁶⁾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인지에 관계없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은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되고 있음.

또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1호 또한 ‘폭행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를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에 따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죄 처벌 비교: [표 1] 참고

다만, 「의료법」 제12조제3항의 적용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로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지 않아,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16)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의2(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¹⁷⁾을 포함하고 있는 「간호법」이 제정(2025. 6. 21. 시행)¹⁸⁾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문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안철수의원안·이주영의원안 제12조제1항, 이주영의원안 제60조제1항).

17) 「간호법」 [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정, 2025. 6. 21. 시행]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8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18) 「간호법」 시행일인 2025. 6. 21.자로 기존의 간호조무사 자격 규정인 「의료법」 제80조는 삭제됨.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삭제>
(이하 생략)

[표 1] 개정안 및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에 따른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죄 처벌 비교

구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현행	안철수의원안	이주영의원안		
보호대상 (피해자)		응급의료종사자(의료인,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현행 동일)	(현행 동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응급구조사 미포함	-
장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 (제60조제1항)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응급실 (응급의료 실시되는 응급실 외 장소 포함) (안 제60조제1항)	(현행 동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제12조제3항)	-
폭행		(별도규정 없음) ※다만, 폭행에 의한 응급의료 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60조제2항제1호)	<신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60조제1항)	<신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안 제60조제1항) ※ 기존 상해죄 법정형과 동일 (상해죄는 삭제하고 폭행에 포섭 규율)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제2항제2호)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제260조제1항)
폭행치상	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현행 동일)	<삭제> ※신설되는 폭행에 포섭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의2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57조제1항)
	중상해, 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현행 동일)	(현행 동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87조의2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제258조제1항)
폭행치사 ¹⁹⁾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현행 동일)	(현행 동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87조의2제1항)	3년 이상 유기징역(제259조제1항)

자료: 개정안 및 각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19) 고의로 사망하게 한 자는 「형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용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개정안은 개별 검토 필요

-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응급실 밖에서의 폭행도 처벌 규정을 강화해 폭넓게 보호하는 것에 공감(안철수의원안)

- 취지는 공감되나 폭행치상 행위와 폭행의 처벌 수준을 동일하게 두는 것은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조정 필요(이주영의원안)

□ (법무부) 법 제60조제1항의 적용 범위를 응급실 외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장소까지 확대하여 응급의료종사자 및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임. 다만,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행위 처벌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과 같은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의 측면에서 충분 검토 필요(안철수의원안)

폭행치상 행위를 폭행에 포섭하여 의율하는 것은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등 폭행에 대한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여 과중한 점을 고려할 때 충분 검토 필요(이주영의원안)

□ (대한의사협회)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에 적극 찬성함.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등과 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09

【참고】	응급실 폭력 등 발생 현황
-------------	-----------------------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기물파손 및 접거	위계 및 위력	폭언·욕설, 위협	폭행	협박	기타(난동, 성추행 등)
2015	378	18	44	53	172	2	89
2016	578	25	61	93	263	2	134
2017	893	23	85	149	365	3	268
2018	1,102	50	226	77	386	119	244
2019	1,312	33	165	463	369	99	183
2020	894	22	68	497	245	32	90
2021	585	33	39	343	189	34	76
2022	606	22	25	373	197	35	76
2023	707	34	17	457	220	51	91
2024	801	28	23	587	123	36	106

주: 사례당 다수의 피해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 ‘발생건수’와 ‘피해별 건수 합계’는 불일치
자료: 보건복지부